

『대만,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포함한 3개 전원공급장치의 법정검사요건 개정안』

2026. 05. 19.

TBT 통보여부	통보	HS Code	850440
통보국	대만	전년도 수출액 (천불)	37,677 (2025)
작성기관	한국인정평가원	문의처	tbt@kotica.or.kr

규제 요약서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다만 BSMI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 정지형 변환기, 기타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 등 3종 전원 공급 장비의 법정 검사 요구사항을 개정하여 최신 CNS 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CNS 15663에 따른 제한물질 함유 표시 요건을 명확화함. 특히 UPS는 최신 안전·EMC 기준을 반영하고, 기타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는 대체 검사 기준 선택을 허용함
- (적용범위) HS Code 850440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 정지형 변환기)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UPS는 출력 전류 400A 이하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하며 CNS 14757-2(2019) 등의 표준을 적용함. 정지형 변환기는 실질적 기준 변경 없이 기존 요구사항을 유지하며, 기타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는 CNS 15598-1 또는 CNS 61558-1 및 CNS 61558-2-16 조합 중 선택할 수 있음. 모든 대상 제품은 제한물질 함유 상태를 표시해야 함
- 인증정보
 - (인증절차) 대상 제품은 원칙적으로 제품 인증 등록(RPC, 모듈 II+III)을 적용하며, UPS에 한해 형식승인 배치검사(TABD)를 선택할 수 있음
 - (유효기간) RPC 인증서 및 TABI 형식승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임
 - (기타사항) 상품검사마크에는 식별번호와 함께 RoHS 또는 RoHS(XX,XX) 표시를 포함해야 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 항목 1 및 항목 3의 신청 시 개정 기준에 부합하는 형식시험보고서와 기술문서를 제출해야 함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유사품목 규제 동향
 - (EU) 전원 어댑터 및 AV/IT 기기용 전원장치는 EN 62368-1 등을 활용하여

적합성을 입증하며, UPS는 EN IEC 62040-1 등이 적용될 수 있음

- (미국) 전원 어댑터 등 외부 전원 공급장치는 DOE 에너지 기준 및 FCC 전자파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UPS는 UL1778 등 안전 기준이 활용됨
- (중국) AVIT 및 통신기기에는 GB 4943.1-2022가 적용되며, 전원 어댑터 등은 제품분류에 따라 CCC 인증 및 China RoHS 표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
- (일본) 전원 어댑터 등은 전기용품안전법상 PSE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UPS 및 SMPS는 제품 구성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결과) 이번 개정은 제품 안전성 강화, 국제 기술 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유해물질 함유 정보 제공을 위한 조치로 필요한 규제로 보임. 다만 UPS의 적용 범위 재판정, 최신 CNS 기준 대응, RoHS 표시자료 준비 및 상품검사마크 변경 등으로 기업의 시험과 라벨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권고사항) 기업은 자사 제품이 UPS, 정지형 변환기, 기타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 중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적용 CNS 기준과 기존 시험성적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시험 및 표시 부담 증가) 최신 CNS 기준 적용, 기존 성적서와 개정 기준 간 차이점 시험 필요성, RoHS 함유 현황 표시 및 상품검사마크 변경으로 인해 대만 수출기업의 시험비용, 갱신 일정, 라벨 수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응 방안

- 기업 전략
 - UPS는 출력 전류 400A 이하 검사 범위 포함 여부를 재검토하고, 안전·EMC 적합성을 사전 확인해야 함
 - 대상 제품은 제한물질 함유 표시자료와 RoHS/RoHS(XX,XX) 마킹을 사전에 준비하고, 2027년 7월 1일 이후 신규·연장 신청에 대비해 형식시험보고서와 기술문서를 최신화해야 함

목 차

요약문	1
I. 규제 개요	2
II. 규제 세부 내용	4
III. 관련 인증 정보	7
IV.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11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1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14
V.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15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15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17
VI. 대응 방안	18
참고 1 규정(전문) 원문 번역본	19
참고 2 규정(부속서) 원문 번역본	24

요 약 문

규제명	영문	Proposal for Amendments to the Legal Inspection Requirements for Three Power Supply Equipment, Including Uninterruptible Power Supplies		
	국문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포함한 3개 전원공급장치의 법정검사요건 개정안		
WTO/TBT 통보문 번호	TPKM/595	통보국	대만	
채택(예정)일	추후 결정	시행현황	개정 초안	
시행(예정)일	2027.07.01	통보일(고시일)	2026.04.30	
HS Code	850440	의견수렴 마감일	2026.06.29	
총 수출액 (천불)	1,013,370 천불 (2025년 기준)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37,677 천불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 여부	미대상			
규제 주요 내용	해당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만 경제부(MOEA) 표준검량검사국(BSMI) 		
	규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UPS 등 3종 전원 공급 장비의 검사 기준을 최신 CNS 표준으로 정비하여 제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제한물질 함유 표시를 통해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유해물질 관리를 명확화하기 위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 정지형 변환기, 기타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의 품목별 검사 기준과 적합성평가 절차를 개정함. 모든 대상 제품은 CNS 15663 제5절에 따라 RoHS 함유 상태를 표시해야 함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안전성 강화, 국제 기술 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유해물질 함유 정보 제공을 위한 조치로 필요한 규제로 보이나, UPS의 적용 범위 재판정, 최신 CNS 기준 대응 등으로 기업의 시험과 라벨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대응 여부	예상 기업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신 CNS 기준 적용, 기존 성적서와 개정 기준 간 차이점 시험 필요성, RoHS 함유 현황 표시 및 상품검사마크 확대 적용으로 인해 대만 수출기업의 시험비용, 갱신 일정, 라벨 수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이 UPS, 정지형 변환기, 기타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 중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 우선 분류한 후, 적용 CNS 기준과 기존 시험성적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며, 신규·연장 신청에 대비하여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 최신 국제 표준 부합 및 안전성 강화
 -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 등 3종 전원 공급 장비의 검사 요구사항을 최신 국제 표준과 정렬하여 제품의 안전 수준을 제고함
 - 특히 UPS의 경우, 제품 안전성 강화와 국제적 기술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현행 표준의 최신 버전을 채택함
- 규제 관리 효율화 및 사업자 선택권 확대
 - 기존에 각각 관리되던 3개의 제품군을 재편성하여 동 규제로 통합하고, 관련 요구사항을 일괄적으로 제시함
 - 규제 대상 UPS 제품의 기준을 총전력량 10kVA 이하에서 출력전류 400A 이하로 명확화
 - 기타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해 대체 검사 표준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자가 규제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로를 유연화함

□ 규제 요지

- 품목별 검사 기준 업데이트
 - (UPS) CNS 14757-2 (2019), CNS 62040-1 (2022) 및 CNS 15663 제5절 「함유 표시」 규정을 적용함
 - (정지형 변환기) CNS 15936 (2016), CNS 15598-1 (2020) 및 CNS 15663 제5절의 기존 규정을 계속 적용함
 - (기타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 기존 기준 외에 CNS 61558-1 (2026) 및 CNS 61558-2-16 (2025)을 대체 표준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적합성평가 및 인증 마킹 규정
 - 모든 대상 제품은 등록된 제품 인증(RPC) 제도(모듈 II+III)를 따르며,

UPS 품목에 한해 형식승인 배치 검사(TABI*)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

* Type Approved Batch Inspection

- CNS 15663 제5절에 따라 6대 제한 물질(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PBB, PBDE)의 함유 현황을 제품 본체, 포장, 라벨 또는 설명서에 명확히 표시해야 함
- 상품 검사 마크(식별 번호 포함)에는 유해물질 함유 상태(RoHS 또는 RoHS(XX,XX)) 정보를 병기해야 함

□ 적용대상

- HS Code 850440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 정지형 변환기)
- 품목 정의 및 범위
 -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 출력 전류 400A 이하 제품 (의료기기 및 통신단말기 전용 제외)
 - (정지형 변환기)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 및 그 부속 장치와 통신기기용 정지형 변환기로,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하는 어댑터 (하이엔드 오디오, 의료 기기, 또는 통신 단말 장비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제외)
 - (기타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하는 어댑터 (하이엔드 오디오, 의료기기, 통신단말기용 제외)

□ 시행일

- 2027년 7월 1일
 - 개정된 검사 기준은 공고일부터 즉시 적용 가능하나, 개정 전 표준은 2027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됨
 - 2027년 7월 1일 이후 제출되는 신규 인증 및 인증 연장 신청 건은 반드시 개정된 검사 기준에 따른 형식시험 보고서와 기술 문서를 제출해야 함

2

규제 세부 내용

□ 세부내용

○ 품목별 검사 표준 업데이트 및 범위 재정의

- 이 개정안은 UPS의 검사 표준을 최신 버전으로 개정하고, 기타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해 검사 표준을 도입하며, 정지형 변환기는 제품군 재편에 따라 현행 요구사항을 개정 범위 내에서 정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 (제1품목)
 - 기존 ‘용량 10kVA 이하’ 기준에서 ‘출력 전류 400A 이하’로 관리 범위를 기술적으로 재정의함
 - 현행 CNS 14757-2(2010) 등에서 CNS 14757-2(2019) 및 CNS 62040-1 (2022)로 최신 표준을 채택하여 안전 요구사항을 강화함
- 정지형 변환기 (제2품목)
 - 검사 기준의 실질적 변경은 없음
 - 적용 기준은 CNS 15936(2016), CNS 15598-1(2020), CNS 15663(2013) 제5절 「함유 표시」임
- 기타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SMPS) (제3품목)
 - 기존 CNS 15598-1 외에도 CNS 61558-1(2026) 및 CNS 61558-2-16(2025)을 선택적 검사 표준으로 도입하여 사업자의 기술적 선택권을 확대함
 - 단, CNS 15936(2016) 및 CNS 15663(2013) 제5절 「함유 표시」는 계속 적용됨

※ 품목별 CNS-국제 표준 매칭 테이블 (참고용)

품목 분류	대만 CNS 표준	대응 국제표준	표준 성격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	CNS 62040-1 (2022)	IEC 62040-1	안전 요구사항
	CNS 14757-2 (2019)	IEC 62040-2	전자기적합성 (EMC)

정지형 변환기 (어댑터)	CNS 15598-1 (2020)	IEC 62368-1	IT/AV 통합 안전 표준
	CNS 15936 (2016)	CISPR 32	멀티미디어 기기 전자파 방사
기타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	CNS 61558-1 (2026)	IEC 61558-1	전원 장치 일반 안전
	CNS 61558-2-16 (2025)	IEC 61558-2-16	SMPS 특수 요구사항

○ 유해물질 함유 표시(RoHS) 의무화 및 마킹 규정

-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모든 대상 제품에 대해 CNS 15663(2013) 제5절 「함유 표시」 준수를 의무화함
 - (제한 물질 관리)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⁶), PBB, PBDE 등 6대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 및 함량을 확인해야 함
 - (표시 방법의 유연화) 함유 현황표(표 1, 표 2)는 제품 본체, 포장, 설명서 등에 표시하되, 웹페이지(URL)를 통한 공개 방식도 허용하여 제조사의 라벨링 부담을 완화함
 - (상품 검사 마크 결합) 상품 검사 마크의 식별번호에는 제한물질 함유 상태를 나타내는 ‘RoHS’ 또는 ‘RoHS(XX,XX)’ 를 함께 표시해야 함

○ 적합성평가 체계 및 행정 절차

- 제품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시장 진입 절차를 체계화함
 - (인증 등록(RPC) 제도 (모듈 II+III))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기본 방식으로, 지정 시험기관의 형식시험(모듈 II)과 제조자의 적합성선언(모듈 III)을 통해 인증을 취득함
 - (형식승인 배치(batch)별 검사(TABI) 제도) UPS(제1품목)에 한해 선택 가능하며, 형식승인 후 매 수입 도착 시마다 샘플링 검사를 거치는 방식임

- (심사 소요 기간) 인증 등록 및 형식승인 심사는 약 14영업일이 소요되며, 샘플 검사 시 7영업일이 추가됨

○ 시행 일정 및 경과 조치

- 제조 및 수입 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과 단계적 전환 규칙을 마련함
- (시행 예정일) 2027년 7월 1일
- (기존 인증서의 효력) 개정 전 표준으로 취득한 인증서는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 가능하며, 주 모델이 변경되지 않는 한 기존 기준에 따른 시리즈 모델 추가가 가능
- 신청 시점별 적용 기준
 - (2027년 6월 30일 이전) 개정 전/후 표준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2027년 7월 1일 이후) 모든 신규 및 연장 신청은 반드시 개정된 최신 표준을 준수해야 함

□ 인증 개요(대만 BSMI, 상품 검증 등록 및 형식승인)

- 전기용품 및 전자제품에 대한 강제적 법정 검사
 - 대만 경제부 표준검량검사국(BSMI*)이 관할하며,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 정지형 변환기, 기타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 등 전원 공급 장비 3종은 시장 진입 전 반드시 필수 검사 절차를 완료해야 함
 - *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 이번 개정안은 제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신 국제 표준을 반영한 CNS 검사 기준을 채택하였으며, 유해물질 함유 표시(RoHS) 요구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포함함
 - 강제 검사 대상인 해당 품목들은 제품 인증 등록(RPC) 제도 또는 형식승인 배치별 검사(TABI) 제도를 통해 적합성을 입증해야 시장 유통이 가능함

□ 인증 절차

- 형식시험
 - (시험 신청) 신청자는 BSMI가 지정한 시험기관에 제품의 형식시험을 신청해야 함
 - (시험 수행) RPC 제도의 모듈 II 및 TABI 제도 모두 BSMI 또는 지정 시험기관에서 최신 CNS 표준(CNS 14757-2 등)에 따른 시험을 수행함
 - (특례 조항) 이미 구 표준(CNS 14757-2(2010) 등)에 따른 시험 보고서를 보유한 경우, 원래의 지정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개정 표준과의 차이점에 대한 보완 테스트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갱신할 수 있음
- 인증 등록 및 형식승인 신청
 - (RPC 제도 신청) 형식시험 보고서(모듈 II)와 함께 제조자가 생산

제품과 형식시험 보고서의 일치를 보증하는 형식 적합성 선언서 (모듈 III)를 작성하여 제출함

- (TABI 제도 신청) 형식시험 통과 후 BSMI 또는 그 지사에 형식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형식승인 인증서를 취득함
- (접수처) 인증 등록(RPC) 및 형식승인 신청은 BSMI 본부 또는 해당 지사에서 관할함

○ 배치(batch) 검사 신청 (TABI 제도 전용)

- TABI는 UPS에 한해 선택 가능함
- (검사 시점) 형식승인 인증서를 취득한 후, 제품이 생산 시설에서 출하되거나 입항지에 도착할 때마다 매번 배치(Batch) 검사를 신청해야 함
- (신청처) 국내 제조업체는 생산지 관할 지사에, 수입업체는 입항 항구 관할 지사에 신청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초월하여 신청 가능함
- (검토 및 샘플링) BSMI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샘플링 시험을 요구할 수 있음

○ 소요 기간

- (기본 기간) 인증 등록 및 형식승인 심사는 자료 접수 후 약 14영업일이 소요됨
- (추가 기간) 보충 서류 또는 샘플 제출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되며, 샘플 검사가 수행되는 경우 샘플 및 시험 장비 인도 후 7영업일이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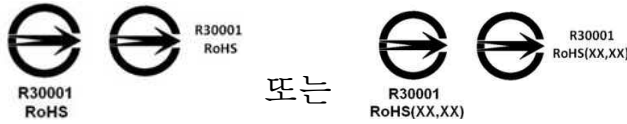
□ 표시사항

○ 상품 검사 마크(Commodity Inspection Mark) 및 라벨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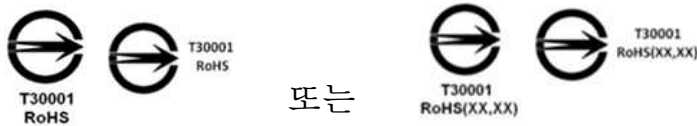
- 마크는 그래픽 심볼, 식별 번호(R 또는 T + 5자리 코드), 그리고 유해물질 존재 조건(RoHS 또는 RoHS(XX,XX))으로 구성됨

- 식별 번호는 심볼의 아래나 오른쪽에 배치하며, 함유 상태 정보는 반드시 두 번째 줄에 명확히 표기해야 함

※ RPC 제도에 따른 마크 :



TABI 제도에 따른 마크 :



○ 제한 물질 함유 표시 (CNS 15663)

-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⁶⁺), PBB, PBDE의 함유 상태를 표 1 및 표 2의 형식에 따라 표시해야 함
- 표시 위치는 제품 본체, 포장, 라벨 또는 사용설명서 중 선택 가능하며, 웹페이지 URL을 기재하는 디지털 공시 방식도 허용됨

□ 신청 시 유의사항

- (인증 유효기간) RPC 인증서 및 TABI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임
 - ※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구 표준 기반 인증서는 만료 시까지 효력이 유지되나, 2027년 7월 1일부터 제출되는 모든 신규 및 연장 신청은 반드시 개정된 표준을 준수해야 함
- (인증비용) RPC 신청비 및 연회비는 제품 형식별 각 5,000대만달러 (NT\$), TABI 형식승인 신청비는 3,500대만달러이며 형식시험 비용은 시험기관별 수수료 규정에 따름
- (서류 보존기간) 공고문은 형식시험보고서 및 기술문서의 별도 보존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규 신청 또는 인증 연장 시 형식 시험보고서와 기술문서 제출이 요구됨. 따라서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 일정에 맞추어 관련 서류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변경사항 발생 시) 제품의 주 모델이 변경되거나 구조, 부품, 재질 등 품질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기존 보고서와 개정 표준 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원래 지정된 시험기관을 통해 차이점 테스트(Gap Test) 및 보충 시험을 진행해야 함
 - (위반 시 제재) 법정 검사 대상 품목을 검사 절차 완료 없이 무단으로 시장에 출시하거나 C.C.C.* 코드를 오기하여 규제를 회피할 경우 다만 상품검사 관련 법령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 Customs Cooperation Council Code, 대만 상품 분류 코드

□ 관련 적합성평가기관

- 형식시험
 - (형식시험기관) 제품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검사하는 형식시험은 반드시 BSMI가 승인한 지정 시험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며, 시험기관의 자격 및 인정 기준은 「전기·전자 제품 형식승인 업무 요점」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승인 기관) 형식시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증서(RPC) 또는 승인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경제부 표준검량검사국(BSMI) 본부 또는 그 소속 지국임
 - 검사 및 사후관리
 - (관할 구역 원칙) 형식승인 후 배치별 검사(TABI)를 신청할 때는 신청인의 위치나 제품 입항지에 따라 관할 기관이 지정됨
 - 국내 생산의 경우 생산지를 관할하는 BSMI 본부 또는 소속 지국에 검사를 신청하며,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 상품이 도착하는 항구를 관할하는 BSMI 지국에 신고 및 검사를 신청함
- ※ 행정적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초월하여 다른 지국에 신청하는 것도 허용됨

4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 EU

- **(현행 규정)** 전원 어댑터 및 SMPS 등 AV/IT 기기용 전원장치는 제품 특성에 따라 EN 62368-1 등 조화표준을 활용하여 저전압지침(LVD) 및 전자파적합성지침(EMC) 적합성을 입증하고 CE 마킹을 부착해야 함. UPS의 경우 전용 안전 표준인 EN IEC 62040-1 및 EMC 표준인 EN IEC 62040-2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제품에 따라 RoHS 지침 및 REACH 규정 준수도 병행 검토해야 함
- **(도입동향)** 외부 전원 공급장치(EPS)에 대해서는 에코디자인 규정인 EU 2019/1782에 따라 무부하 전력 및 평균 효율 등 에너지 효율 요건이 적용되고 있음. 또한 2024년 발효된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라 향후 제품군별로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가능성, 정보 제공 등 지속가능성 요건이 단계적으로 구체화될 예정임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EU는 스마트폰, 태블릿, 디지털카메라, 이어폰 등 일부 휴대용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USB-C 공통 충전 요건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트북은 별도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될 예정임. 이는 어댑터·충전기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뿐 아니라 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소비자 편의성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음

2 미국

- **(현행 규정)** 전원 어댑터 등 외부 전원 공급장치(EPS)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에너지보존 기준 및 시험방법 적용 대상이며, 안전성 측면에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UL 62368-1, UPS의 경우 UL 1778 등이 활용됨. 전자파 방출 관련해서는 FCC Part 15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정부의 에너지 효율 규제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도입동향)** DOE는 외부 전원 공급장치와 UPS 등 전력 관련 제품에 대해 시험방법 및 효율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갱신하고 있음. UPS의 경우 DOE가 시험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에서는 최신 산업표준과의 정합성, UPS 유형 정의, 무부하 시험 조건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이루어짐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미국은 연방 차원의 에너지 효율 기준 및 FCC 전자파 규제와 함께, NRTL 인증이 실질적인 시장 진입 요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UPS 등 일부 제품군은 ENERGY STAR와 같은 자발적 고효율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에서 고효율 제품을 구분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3 중국

- **(현행 규정)** 중국은 AV/IT 및 통신기기 안전 표준인 GB 4943.1-2022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전원 어댑터·충전기 등은 제품분류와 용도에 따라 CCC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China RoHS 2.0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함유 정보 표시 및 관련 요구사항을 검토해야 함
- **(도입동향)** 중국은 휴대용 보조배터리 및 이동전원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GB 47372-2026 등 이동전원 관련 강제 표준을 통해 열폭주, 오사용, 제조 일관성, 추적성 등 안전 요구사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비되고 있음. 이는 다만 BSMI가 2027년을 기점으로 일부 전원 공급 장비의 기준을 전환하는 흐름과 유사하게, 전원 관련 제품의 안전 기준을 상향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중국 내 유통되는 전원 어댑터 및 충전기는 CCC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및 CCC 마크 표시가 필요하며, 전기전자제품에는 China RoHS 표시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음. 표준 개정 시 기존 인증서의 갱신 또는 보완시험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최신 GB 표준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함

- **(현행 규정)** 일본은 전기용품안전법(DENAN)에 따라 지정 전기용품에 대해 PSE 표시를 요구함. 전원 어댑터는 제품의 정격과 구조에 따라 특정전기용품으로 분류되어 등록검사기관의 적합성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음. UPS 및 SMPS는 제품 구성, 정격, 용도에 따라 PSE 대상 여부와 표시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품목분류 확인이 필요함. 안전 기준은 제품 특성에 따라 JIS C 62368-1 등 국제표준과 부합화된 JIS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음
- **(도입동향)** 일본은 에너지절약법상 톱 러너 제도를 통해 자동차, 에어컨, 조명, 변압기, 라우팅·스위칭 기기 등 다양한 제품군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고 있음. 다만 UPS 자체가 톱 러너 대상 품목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UPS에 대해서는 PSE 대상 여부, 적용 JIS 기준, 에너지 효율 관련 민간·조달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일본 시장에서는 PSE 대상 품목의 경우 PSE 표시 여부가 통관 및 유통에서 중요한 요건이 되며, 전원 어댑터 등 관련 제품은 특정전기용품 해당 여부에 따라 제3자 적합성검사 필요성이 달라짐. 또한 일부 산업용·비상전원 용도에서는 조달 기준, 시설 안전 기준 또는 고객사 요구사항에 따라 UPS의 신뢰성·효율·안전성 기준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구분	대만	EU	미국	중국	일본
상위 법·프레임(전반)	상품검사법(Commodity Inspection Act)	LVD(저전압), EMC(전자파), RoHS(유해물질), ErP(에코디자인) 지침	OSHA(안전), DOE(효율), FCC(전자파), NEC(설치) 규정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 조례 (CCC 인증 제도)	전기용품안전법 (DENAN Law)
주요 규제부처	경제부 표준검량검사국 (BSMI)	유럽 위원회(EC) 및 각 회원국 시장감시국	에너지부(DOE), 연방통신위원회(FCC), 노동부 (OSHA)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SAMR),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경제산업성 (METI)
제품 카테고리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 정지형 변환기(어댑터), 기타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SMPS)	IT/AV 기기, 가전제품 (UPS, Adapter)	IT/가정용 기기, 에너지 사용 제품	강제 인증 대상 품목 (IT, 가전, 리튬배터리 등)	특정 전기용품(A형), 특정 외 전기용품(B형)
대표 기술규격	CNS 14757-2 (2019), CNS 62040-1 (2022), CNS 15936 (2016), CNS 15598-1 (2020), CNS 15663	EN 62368-1 (IT/AV), EN 62040-1 (UPS)	UL 62368-1, UL 1778 (UPS), FCC Part 15	GB 4943.1-2022 (안전), GB/T 9254.1 (전자파)	J62368-1 (IT/AV), J62040-1 (UPS)
주요 형식시험 항목	전기적 안전성(감전, 온도), 에너지 효율, 유해물질 함유 상태(RoHS) 테스트	내전압, 접지 연속성, 온도 상승, 누설 전류, 에너지 효율 시험	절연 내력, 화재 위험성, 배터리 안전성, 전자파 방사	절연 저항, 비정상 동작, 리튬전지 안전성(GB 31241)	내열성, 절연 성능, 전도성 노이즈, 기계적 강도
적합성 선언/문서	형식시험 보고서, 형식 적합성 선언서(모듈 III), 기술문서	DoC (적합성 선언서), 기술문서	NRTL 시험 보고서, FCC 인증서, DOE 효율 등록증	CCC 인증서, 형식시험 보고서, 공장 심사 보고서	적합성 검사 증명서 (A형), 자율 확인 기록 (B형)
인증·마크	상품검사마크, 식별 번호	CE 마킹	NRTL 마크 (UL, ETL 등), FCC 마크	CCC 마크	PSE 마킹
사후관리(감시)	RPC 국경 검사, TABI 배치별 검사, 시장 감시	시장 감시(RAPEX), 유통 제품 무작위 샘플링	NRTL 공장 사후 심사(연 2~4회), DOE 불시 단속	정기 공장 심사(연 1회), 시장 표본 검사	수입업체 보고 의무, METI 불시 현장 점검
최근 개정·전환 포인트	최신 국제 표준 부합화 및 RoHS 함유 표시 의무화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적용 강화, USB-C 공통 충전기 의무화	DOE UPS 에너지 효율 기준 업데이트, UL 62368-1 제3판 전환	GB 4943.1-2022(신표준) 전면 시행, 보조배터리 CCC 의무화	전기용품안전법 부칙 개정 (최신 국제표준 부합화)
라벨 필수 문구	식별 번호, 유해물질 함유 현황, 모델명	제조사/수입업체명 및 주소, 정격 입력력, CE 마크	정격 정보, NRTL 마크, FCC 관련 경고문(Part 15)	모델명, 정격 전압(220V), 빈도(50Hz), 중국어 표기, CCC 로고	PSE 로고, 수입업체명(사업자명), 정격 정보
사용설명서 필수항목	장비명, 모델명, 제한 물질 함유 현황표 또는 해당 웹사이트	안전 지침(현지어), 사용 용도, 폐기 방법(WEEE)	접지 지침, 배터리 주의사항, 설치 가이드	중국어 간체 안전 경고문, 기술 파라미터, 품질보증서	올바른 사용법, 과열 주의 사항, 사후 서비스 연락처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규제 개요

항목	내용
규정명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를 포함한 3종 전원 공급 장비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개정안
관리기관	대만 경제부(MOEA) 표준검량검사국(BSMI)
법적근거	대만 「상품검사법(Commodity Inspection Act)」
개정 주요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PS 검사 기준을 최신 CNS 기준으로 개정하여 제품 안전성 및 국제 기술 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함 - 기타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에 대체 검사 기준을 도입하여 적합성 입증 경로를 확대함 - 개별 관리되던 전원장치 3종을 하나의 행정 패키지로 통합함

○ 주요 요구사항

- 품목별 기술 표준 상향 및 범위 재설정
 -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 기존 UPS 관련 품목 구분을 정리하여 개정 후에는 출력 전류 400A 이하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명시하나, 의료기기 또는 통신단말장비용 제품은 제외됨
 - (정지형 변환기) 검사 기준의 실질적 변경은 없음
 - (전원 어댑터 및 SMPS) IT/AV 통합 안전 표준인 CNS 15598-1(2020) 또는 대체 표준인 CNS 61558 시리즈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유해물질 함유 표시(RoHS) 의무화
 - (제한 물질)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⁶⁺), PBB, PBDE 등 6대 물질에 대해 CNS 15663 제5절에 따른 「함유 표시」를 수행해야 함

- (표시 방식) 제품 본체, 포장, 설명서 등에 함유 현황표를 부착하거나, 웹사이트 URL을 기재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적합성평가 및 마킹
- 모든 제품은 제품 인증 등록(RPC) 또는 형식승인 배치별 검사(TABI)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품 검사 마크(R 또는 T) 하단에 유해물질 함유 상태(RoHS 등)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 평가 항목별 영향 분석

평가항목	내용
필요성	국제적인 전기 안전 표준 업데이트 추세에 대응하고, 전자기기 내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여 대만 내 공공 안전 및 환경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비차별성	공고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생산품 및 수입품 모두 시장 출시 전 관련 검사 절차를 완료해야 하므로, 적용 구조상 국산품과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로 볼 수 있음
최소무역제한성	국제표준(IEC)과 부합화된 CNS 표준을 채택하여 기술적 장벽을 최소화하였으며, 기존 성적서 보유 기업에 대해 차이점 시험(Gap Test)만으로 보고서를 갱신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함
투명성	WTO TBT 통보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해관계자에게 개정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였으며, 상세한 비교표와 경과 조치를 제공하여 투명성을 확보함

○ 경제성 분석(시나리오)

구분	RPC (기존 성적서 활용)	RPC (신규 형식시험)	TABI
대상 제품	UPS, 기타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	UPS, 정지형 변환기, 기타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	UPS에 한함
신청비	NT\$5,000	NT\$5,000	NT\$3,500
연회비	NT\$5,000	NT\$5,000	-
형식시험비*	차이점 시험: 약 NT\$30,000~80,000	신규 시험: 약 NT\$100,000~250,000	-
라벨·포장 변경비*	약 NT\$20,000~50,000	약 NT\$20,000~50,000	약 NT\$20,000~50,000
배치검사 비용	-	-	수입·출하 배치별 발생 가능

		(수입신고가격(CIF 등)의 약 0.25% 배치당 최저 NT\$500 적용 가능(품목별 BSMI 수수료 규정 확인 필요))
--	--	--

* 형식시험비와 라벨·포장 변경비는 공고문상 제시된 금액이 아닌 가정값으로, 실제 비용은 BSMI 지정 시험기관 견적, 시험항목, 시험 시간,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및 권고 사항

- 규제는 기존 안전 및 에너지 검사 체계를 기반으로 최신 국제표준(IEC) 부합화 및 유해물질 함유 표시(RoHS) 의무를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중국·EU 등 주요국의 환경 및 안전 규제와 전반적으로 정합성이 높아 기술적 대응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의 관리 기준이 기존 용량(kVA) 중심에서 출력 전류(400A 이하) 중심으로 재정의됨에 따라, 자사 제품이 검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며, 의료기기나 통신단말기 전용 제품 등 예외 조항 적용 여부에 대한 사전 법적·기술적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기업은 개정 표준(CNS 62040-1 등)에 따른 제품 설계 적합성을 식별하고, 기존 성적서를 활용한 차이점 시험(Gap Test) 가능 여부를 점검하여 비용을 최적화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최신 국제 안전 및 환경 정보 표시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대만 시장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권장됨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연번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해당 없음
2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해당 없음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해당 없음
4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해당 없음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해당 없음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해당 없음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해당 없음
8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해당 없음*

- 대만의 상품 검사 체계(RPC 및 TABI)는 원칙적으로 BSMI 또는 BSMI 지정 시험기관의 형식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본 개정안에는 외국의 유사 인증을 자동 인정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단, 이번 개정안은 항목 1 UPS의 경우 기존 CNS 기준에 따른 형식시험 보고서, 항목 3 기타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의 경우 기존 IEC 61558 계열 시험보고서를 보유한 경우, 원 지정 시험기관에서 개정 기준과의 차이점 시험을 수행한 후 형식시험 보고서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또한, 국가별 안전 규제는 해당 국가의 기술적 환경과 소비자 안전 수준을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만은 WTO TBT 통보를 통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외국의 유사 인증 불인정에 따른 전형적인 TBT 위반 사례로 보기는 어려움

6

대응 방안

□ 대응 방안

○ 기업 전략

구분	대응 핵심	대응 방안
공통	최신 기술 표준 부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PS의 경우 출력 전류 400A 이하 범위 포함 여부를 재판정하고, 최신 표준인 CNS 62040-1(2022) 및 CNS 14757-2(2019)에 따른 절연 및 안전 설계를 업데이트 해야 함 - 정지형 변환기는 실질적인 검사 기준 변경은 없으나, CNS 15936(2016), CNS 15598-1(2020), CNS 15663 제5절 적용 대상임을 전제로 기존 인증·시험자료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함
	인증 전환 및 행정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7년 7월 1일 전면 시행 전까지 기존 성적서를 활용한 차이점 시험(Gap Test) 가능 여부를 원래 지정 시험기관과 확인하여 재인증 비용을 최소화해야 함 - 시행일 이후 연장 신청 시 발생할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2027년 상반기 내에 최신 표준에 따른 인증 갱신을 완료하고, 기술문서 및 대만 현지 언어 사용설명서를 최신화 해야 함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정보는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knowtbt.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의 상담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kr 접속 → 상담·정보조사 신청 → 상담 신청)

참고 1

규제원문(전문) 번역본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를 포함한 3종 전원 공급 장비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개정안

경제부(MOEA) 표준·계량·검사국(BSMI)

서론:

이번 개정안은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 정적 변환기 및 기타 스위치 모드 전원 공급 장치 등 3가지 제품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UPS의 경우, 제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현행 국제 표준에 부합하기 위해 최신 버전의 검사 기준을 채택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정지형 변환기의 경우 실질적인 변경 사항은 없으며, 제품 분류 재편에 따른 결과로 개정 대상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사업자에게 적용 요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기타 스위치 모드 전원 공급 장치의 경우, 사업자가 규제 요건 준수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대체 검사 기준을 도입하였다.

제안된 시행일: 2027년 7월 1일

적용 대상 제품 범위

품목	제품 설명	검사 기준	적합성평가 절차	CCC 코드 (첫 6자리는 HS 코드와 동일) (참조)
1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검사 범위: 출력 전류가 400A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 의료 기기 또는 통신 단말기용 장비는 제외)	1. CNS 14757-2 (2019) 2. CNS 62040-1 (2022) 3. CNS 15663 (2013) 절 5 "함유 표시"	RPC 제도(모듈 II+III) 또는 TABI 제도	8504.40.92.00.6 8504.40.93.00.5
2	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용 정지형 변환기 및 그 부속 장치, 그리고 통신 기기(검사 범위: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하는 어댑터; 하이엔드 오디오, 의료 기기 또는 통신 단말 장비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제외)	1. CNS 15936 (2016) 2. CNS 15598-1 (2020) 3. CNS 15663 (2013) 절 5 "함유 표시"	RPC 체계 (모듈 II+III)	8504.40.20.00.3A
3	기타 스위치 모드 전원(검사 범위: AC를 DC로 변환하는 어댑터; HI-오디오, 의료 기기 또는 통신)	1. CNS 15936 (2016) 2. (1) CNS 15598-1 (2020) 또는 (2) CNS 61558-1 (2026) 및 CNS 61558-2-16 (2025) 3. CNS 15663 (2013) 제	RPC 체계 (모듈 II+III)	8504.40.91.00.7A

단말 장비)	5 "존재 표시"
항목 1의 수입 규제 코드는 C02이다. 항목 2와 3에는 수입 규제 코드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	
참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시험 기준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원래 지정된 시험기관에 해당 차이 사항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여 형식시험 보고서를 취득할 수 있다. (1) 항목 1에 열거된 제품 중 CNS 14757-2 (2010), CNS 14843-1 (2004) 및 CNS 14843-2 (2004)에 기초하여 시험 보고서를 취득한 제품, 그리고 (2) 항목 3에 열거된 제품 중 IEC 61558-1 (2009) 및 IEC 61558-2-16 (2009 또는 2013)에 근거하여 시험 보고서를 취득한 제3항에 열거된 제품의 경우.	

두 가지 유형의 적합성평가 절차에 대한 설명:

1. 제품 인증 등록(RPC) 제도 (모듈 II+III):

제품 인증 등록(RPC) 제도는 대량 생산 시작 전에 제품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평가 제도다. 이 제도는 모듈식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품 설계 및 생산의 다양한 단계를 다루는 7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각 제품에 대해 특정 모듈 조합이 규정되어 있다.

RPC 제도 하에서 모듈 II는 제품이 BSMI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수행하는 형식시험을 거쳐야 함을 요구한다. 모듈 III는 의무 검사 신청자가 형식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고, 제조된 상품이 형식시험 보고서에 명시된 사양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함을 요구한다. RPC는 일반적으로 배치별 검사 절차의 대안으로 가능하며, 신청자는 자사 제품에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제품이 BSMI의 인증 및 등록을 완료하면 상품 검사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RPC 국경 검사에 선정되지 않는 한 해당 제품은 추가 검사 없이 직접 통관할 수 있다. RPC 국경 검사의 기본 표본 추출 비율은 낮으나, 시장 감시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RPC의 신청 수수료와 연회비는 제품 유형당 각각 5,000대만달러이며, RPC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BSMI 웹사이트(<https://www.bsmi.gov.tw/wSite/ct?xItem=102868&ctNode=9846&mp=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형식승인 배치 검사(TABI) 제도

이 제도에 따라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BSMI 또는 BSMI가 인정하는 지정 시험 기관에서 제품에 대한 형식시험을 받아야 하며, BSMI 또는 그 지사에 형식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형식승인증을 취득한 후,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제품이 생산 시설에서 출하되거나 입항지에 도착하기 전 매번 BSMI에 배치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BSMI는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시험을 위해 샘플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품이 검사를 통과하면 식별 번호가 포함된 그래픽 심볼로 구성된 상품 검사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식별 번호는 로마자 'T'와 BSMI가 할당한 지정 코드(5자리)로 구성된다. 형식승인 인증서 신청 수수료는 3,500대만달러이며,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형식시험 수수료는 제품에 따라 다르며, 관련 시험기관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BSMI 웹사이트(<https://www.bsmi.gov.tw/wSite/ct?xItem=102867&ctNode=9846&mp=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 형식시험 신청처:

BSMI 지정 시험기관.

나. 형식승인/제품 인증 등록 신청처:

BSMI 본부 또는 지사.

다. 배치 검사 신청처:

1. 국내 제조업체 또는 위탁 제조업체: 검사 신청서는 생산지를 관할하는 BSMI 또는 그 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초월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수입업체 또는 위탁 수입업체: 검사 신청서는 입항 항구를 관할하는 BSMI 또는 그 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초월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 형식승인/제품 인증 등록 소요 기간:

14영업일. (보충 서류 또는 시료 제출을 기다리는 기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샘플이 시험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샘플 및 부수적인 시험 장비가 인도된 후 7영업일이 추가된다.)

마. 관련 요건:

1. 제1항 및 제3항에 열거된 제품의 경우, 개정된 검사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개정 전 검사 기준은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2. 제1항 및 제3항에 열거된 제품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다음의 형식승인 및 제품 인증 등록(RPC) 절차가 적용된다:

(a) 개정 전 검사 기준에 따라 발급된 기존 형식승인 인증서 또는 RPC 인증서는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주 모델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인증서 유효 기간 동안에는 개정 전 검사 기준에 따라 제품 시리즈 추가 또는 승인 신청을 계속 제출할 수 있다.

(b) 2027년 7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

“상품 형식승인 규정” 또는 “제품 인증 등록 규정”에 명시된 적용 요건을 준수하는 갱신 신청 및 신규 신청의 경우, 개정 전 검사 기준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발급된 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만료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c) 2027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신청

“상품 형식승인에 관한 규정” 또는 “제품 인증 등록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적용 요건을 준수하는 갱신 신청 및 신규 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개정된 검사 기준을 준수하는 형식시험 보고서 및 기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발급된 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만료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3. 범위 표에 열거된 제품은 CNS 15663(2013) 제5장 “표시”에 따라, 제품 본체, 포장, 라벨 또는 사용 설명서에 표 1 및 표 2에 규정된 형식으로 제한 물질의 존재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제한 물질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가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 관련 URL을 제품 본체, 포장, 라벨 또는 사용 설명서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표시 위치에 관한 제5.3항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4. 목록에 등재된 제품의 경우, 상품검정표시에 대한 라벨링 요건은 다음과 같다:

(a) “상품 검사 마크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 검사 신청자는 식별 번호가 포함된 그래픽 심볼로 구성된 상품 검사 마크를 자체적으로 인쇄해야 한다. 식별 번호는 로마자, 지정 코드(5자리 숫자) 및 제한 물질의 존재 여부 표시(예: RoHS 또는 RoHS(XX,XX))로 구성되어야 한다. RPC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의무 검사 신청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 검사 마크를 인쇄하여 제품 자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b) 식별 번호는 그래픽 심볼의 아래쪽 또는 오른쪽에 배치해야 하며, “제한 물질의 함유 여부”는 두 번째 줄에 표시해야 한다.

(c) 상품 검사 마크에 대한 고정된 치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제품 본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절한 크기로 부착되어야 한다. 마크는 변질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명확하고 가독성이 뛰어나며, 쉽게 지워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d) RPC 제도에 따른 상품 검사 마크의 예는 다음과 같다:



(e) TABI 제도에 따른 상품 검사 마크의 예는 다음과 같다:



(f) RoHS는 CNS 15663에 명시된 면제 사항을 제외하고, 제품 내 제한 물질의 함량이 기준 백분율 값을 초과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RoHS(XX,XX)는 CNS 15663에 명시된 면제 사항을 제외하고, 제품 내 제한 물질(XX)의 함량이 기준 백분율 값을 초과함을 나타낸다.

제한 물질: CNS 15663 부록 A에 명시된 Pb, Cd, Hg, Cr⁺⁶, PBB 및 PBDE.

예시:

RoHS (Pb)는 상품의 특정 부품에 포함된 Pb의 함량이 CNS 15663 부속서 A에 명시된 기준 백분율 값을 초과함을 나타낸다.

RoHS (Cd, Cr⁺⁶, PBB)는 상품의 특정 부품에 포함된 Cd, Cr⁺⁶ 및 PBB의 함량이 CNS 15663 부속서 A에 명시된 각 기준 백분율 값을 초과함을 나타낸다.

5. 형식시험에 필요한 기술 문서는 "전기·전자 제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6. 제품 형식시험 수수료는 BSMI 지정 시험기관의 수수료 표에 따라 부과된다.
7. 제품 인증의 형식승인/등록 수수료는 "상품 검사 수수료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8. 표에 기재된 C.C.C. 코드는 참고용이다. 기재된 제품이 재무부 관세청 또는 경제부 국제무역청에 의해 기재된 참조 C.C.C.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당 제품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해당 검사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9. 표기된 제품에 대한 검사 기준은 본 공고에 명시된 버전을 기준으로 한다. 새로운 버전이나 개정판이 발행될 경우, BSMI는 별도의 공고를 통해 시행일을 공지한다.
10. 목록에 등재된 제품이 복합 기능 또는 다기능 제품이며 의무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관련 검사 기준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제품에 의무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부속품이 동봉된 경우, 이러한 부속품 또한 적용 가능한 검사 기준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1. 상기 제품의 상품명세서에 언급된 "의료기기"라는 용어는 「의료기기법」에 정의된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12. 목록에 기재된 제품의 상품명세서에서 언급된 "통신단말기"라는 용어는 「통신관리법」에서 정의하는 통신단말기를 의미한다.
13. 보건복지부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발행한 시험 보고서, 혹은 교통통신부가 위임한 인증 기관이 발행한 차량 안전 시험 보고서를 취득한 등재 제품은 BSMI의 의무 검사 대상 제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 1. 제한 물질의 함유량이 기준 백분율 값을 초과하는 경우의 표시 예

장비명: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형식명: XXX (참고)						
단위	제한 물질 및 화학 기호					
	납 (Pb)	수은 (Hg)	카드뮴 (Cd)	6가 크롬 (Cr ⁺⁶)	폴리브로민화 비페닐 (PBB)	폴리브로민화 디페닐 에테르 (PBDE)
회로 기판	초과 0.1 wt %	○	○	○	○	○

외함	○	○	0.1 wt % 초과*	○	○	초과 0.1 wt %
제어 보드	—	○	○	○	○	○
액세서리	—	○	○	○	○	○

주 1: "0.1wt % 초과" 및 "0.01wt % 초과"는 제한 물질의 함량이 존재 조건의 기준 백분율 값을 초과함을 나타낸다.
주 2: "○"는 제한 물질의 함량이 존재 조건의 기준 백분율을 초과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주 3: "—"는 해당 제한 물질이 면제됨을 나타낸다.

* 번역자 주 : 제출된 영문 개정안에서는 0.1 wt % 초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어인 대만어로 작성된 부속서에는 0.01 wt %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국제 및 대만 표준에서는 카드뮴에 대해 10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어 부속서의 수치인 0.01 wt %가 합당하며, 영문판의 수치는 오류인 것으로 보임

표 2. 면제 물질을 제외하고 제한 물질의 함량이 기준 백분율 값을 초과하지 않는 표시 예

장비명: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형식 명칭: XXX (주)						
단위	제한 물질 및 화학 기호					
	납 (Pb)	수은 (Hg)	카드뮴 (Cd)	6가 크롬 (Cr ⁺⁶)	폴리브로민화 비페닐 (PBB)	폴리브로민화 디페닐 에테르 (PBDE)
회로 기판	○	○	○	○	○	○
외함	○	○	○	○	○	○
제어 보드	—	○	○	○	○	○
액세서리	—	○	○	○	○	○

주 1: "○"는 제한 물질의 함량이 기준치 비율을 초과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주 2: "—"는 해당 제한 물질이 면제됨을 나타낸다.





참고: 샘플 라벨의 표시 위치가 해당 제품과의 대응 관계를 명확히 나타내기에 충분한 경우, 장비명 및 형식 명칭 기입란을 생략할 수 있다. 동일한 샘플 라벨이 여러 형식 명칭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명칭들을 동일한 기입란에 기재할 수 있다.

참고 2

규제원문(부속서) 번역본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부 표준검사국					
검사 대상 정보 제품류인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등 3개 품목에 대한 관련 검사 규정 개정안 대조표					
항 목 번 호	개정 후		개정 전		검사 방식
	품목명	검사 기준(주)	품명	검사 기준	
1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출력 전류가 400A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기 또는 통신 단말 장치용 제품은 제외함)	1. CNS 14757-2 (2019년판) 2. CNS 62040-1 (2022년판) 3. CNS 15663 제5절 「함유 표시」 (2013년판)	기타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용량 10kVA를 초과하지 않는 것	CNS 14757-2 (99년판), CNS 14843-1 (93년판), CNS 14843-2 (93년판), CNS 15663 제5절 「함유 표시」 (2013년판)	인증 등록(형식시험 방식 및 적합성 선언 방식) 또는 형식승인 단계별 검증
			기타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출력 전류가 400A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	CNS 14757-2 (2010년판), CNS 14843-1 (93년판), CNS 14843-2 (93년판), CNS 15663 제5절 「함유 표시」 (2013년판)	
2	자동 데이터 처리기 및 그 부속 장치와 통신 기기용 정지형 변환기(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전원 어댑터에 한함. 하이엔드 오디오 전용이거나 의료 기기, 통신 단말 장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 CNS 15936 (2016년판) 2. CNS 15598-1 (2020년판) 3. CNS 15663 제5절 「함유 표시」 (2013년판)	자동 데이터 처리기 및 그 부속 장치와 통신 기기용 정지형 변환기(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전원 어댑터에 한함. HI-END 오디오 전용 또는 의료 기기, 통신 단말 장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 CNS 15936 (2016년판) 2. CNS 15598-1 (2020년판) 3. CNS 15663 제5절 「함유 표시」(2013년판)	인증 등록 (형식시험 방식 및 적합성 선언 방식)
3	기타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AC-DC 변환 전원 어댑터에	1. CNS 15936 (2016년판) 2. (1)CNS 15598-1(2020년판)	기타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전원 어댑터에	1. CNS 15936 (2016년판) 2. CNS 15598-1 (2020년판)	인증 등록 (형식시험 방식 및 적합성 선언 방식)

<p>한함. 하이엔드 오디오 전용 제품 또는 의료 기기, 통신 단말 장비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p>	<p>또는 (2) CNS 61558-1(2026년판), CNS 61558-2-16(2025년판) 3. CNS 15663 제5절 「함유 표시」(2013년판)</p>	<p>한함. 하이엔드 오디오 전용 제품 또는 의료 기기, 통신 단말 장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p>	<p>3. CNS 15663 제5절 「함유 표시」(2013년판)</p>	
<p>참조 상품 분류 번호 및 수입 규정: 1. 품목 번호 1: 8504.40.92.00.6, 8504.40.93.00.5, 수입 규정: C02. 2. 항목 2: 8504.40.20.00.3A, 수입 규정: 없음. 3. 항목 3: 8504.40.91.00.7A, 수입 규정: 없음. 주: 표의 항목 1 상품은 CNS 14757-2 (99년판), CNS 14843-1 (2004년판), CNS 14843-2 (2004년판) 형식시험 보고서를 취득한 경우, 또는 항목 3 상품이 IEC 61558-1(2009년판), IEC 61558-2-16(2009년판 또는 2013년판) 형식시험 보고서를 취득한 경우, 원래 지정 시험기관에서 차이점 테스트를 보완한 후 형식시험 보고서로 전환할 수 있다.</p>				
<p>기타 검사 규정: 1. 표기 항목 1, 3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개정 후 검사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시행되며, 개정 전 검사 기준은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중단된다. 공고일로부터 표기 항목 1에 해당하는 상품의 형식승인 및 표기 항목 1, 3에 해당하는 상품의 검증 등록 처리 방식: (1) 이미 인증서를 취득한 경우: 개정 전 검사 기준에 따라 취득한 상품 형식승인 또는 검증 등록 인증서는 유효 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주 모델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인증서 유효 기간 내에는 여전히 기존 검사 기준에 따라 시리즈 상품 추가 또는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인증서 연장 대상자: 개정 전 검사 기준에 따라 취득한 상품 형식승인 또는 검증 등록 인증서 중 「상품 형식승인 관리 규정」 또는 「상품 검증 등록 규정」에 정한 연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기존 검사 기준에 따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후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3년이며, 그 유효 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27년 7월 1일부터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개정된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형식시험 보고서 및 기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신규 신청자: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개정 전 검사 기준에 따라 인증서를 취득한 경우,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된 검사 기준에 따라 인증서를 취득한 경우,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2027년 7월 1일부터 신청하는 자는 개정된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형식시험 보고서 및 기술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다. 2. 표에 기재된 상품은 검사 기준 CNS 15663(2013년판) 제5절 「함유 표시」 규정에 따라, 유해물질의 함유 현황(표 1, 표 2 양식 기준)을 상품의 본체, 포장, 라벨 또는 설명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 본체, 포장, 라벨 또는 설명서에 해당 웹 주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표시 위치는 CNS 15663 제5.3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표기 대상 상품의 상품검정표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검증표식 사용방법」 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자가 직접 인쇄하며, 그 식별 번호는 「문자열, 「신청인 코드(5자리)」 및 「제한 물질 함유 현황」(예: RoHS 또는 RoHS(XX,XX))으로 구성된다.상품 검증 등록증 취득일로부터 규정에 따라 상품 검사 표지를 직접 인쇄하여 상품 본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할 수 있다. (2) 식별 번호는 기본 도형 바로 아래 또는 오른쪽에 위치해야 하며, 제한 물질 함유 여부는 두 번째 줄에 기재해야 한다. (3) 상품 검사 표지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상품 본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절한 비율로 표시해야 하며, 변질되기 어려운 재질을 사용하여 내용이 선명하고 지워지지 않게 영구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4) 인증 등록을 선택한 경우, 상품 검사 표식의 예시는   R30001 RoHS 또는   R30001 RoHS(XX,XX)</p>				



(5) 형식승인 및 배치별 검사를 채택하는 경우, 상품 검사 표지 예시는



또는 T30001 RoHS(XX,XX)

(6) RoHS: CNS 15663에서 규정한 제외 항목을 제외하고, 제품에 포함된 제한 물질의 함량이 백분율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RoHS(XX,XX): CNS 15663에서 규정한 제외 항목을 제외하고, 제품에 포함된 제한 물질(XX)의 함량이 백분율 기준치를 초과함을 나타낸다.

제한 물질이란 CNS 15663 부록 A에 규정된 Pb, Cd, Hg, Cr⁺⁶, PBB 및 PBDE를 의미한다.

예: RoHS(Pb)는 해당 상품의 일부 구성 요소에서 납 함량이 CNS 15663 부록 A에 규정된 백분율 기준치를 초과함을 나타낸다.

예: RoHS(Cd, Cr⁺⁶, PBB)는 해당 상품의 일부 구성품에서 카드뮴, 6가 크롬 및 폴리브로모비페닐의 함량이 CNS 15663 부록 A에 규정된 백분율 함량 기준치를 초과함을 나타낸다.

4. 표기된 상품의 형식시험 접수처: 본국이 인정한 지정 시험기관.

5. 표기된 상품의 형식승인/인증 등록 접수처: 본국 또는 본국 소속 지국.

6. 배치별 검사 접수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생산자 또는 위탁 생산자: 생산지 관할 구역에 따라 본국 또는 본국 소속 지국에 검사 신청을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넘어 신고할 수 있다.

(2) 수입자 또는 위탁 수입자: 수입 상품이 도착한 항만의 관할 구역에 따라 본국 또는 본국 소속 지국에 신고·검사를 신청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초월하여 신고·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7. 상품 검증 등록 또는 형식승인 심사 기간은 14영업일이다(자료 또는 샘플 추가 제출을 기다리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무작위 검사

시, 샘플 및 시험 주변 장비가 도착한 후 7영업일을 추가한다).

8. 형식시험 시 제출해야 할 기술 문서는 「전기·전자 제품 형식승인 업무 요점」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9.

표기된 상품의 형식시험 비용: 시험실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10. 표기된 상품의 검증 등록 및 상품 형식승인 배치별 검사 비용은 「상품 검사 수수료 징수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11. 표에 기재된 참고 상품 분류 번호는 참고용일 뿐이며, 표에 기재된 상품이 재정부 관세청 또는 경제부 국제무역청으로부터 표에 기재된 참고 상품 분류 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검사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12. 표기된 상품의 검사 기준은 본 공고에서 지정한 판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판이 있을 경우 본국에서 별도로 시행일을 정한다.

13. 표에 기재된 상품 중 복합 기능 또는 다기능 제품을 갖춘 경우, 검사 대상 범위에 속하는 것은 관련 검사 기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검사 대상 범위에 속하는 부속품이 부착된 경우 해당 부속품은 관련 검사 기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4. 표에 기재된 품목명에서 말하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관리법에서 말하는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15. 표에 기재된 품목명에서 말하는 통신 단말 장비는 「통신관리법」에서 말하는 통신 단말 장비를 의미한다.

16. 표에 기재된 상품 중 이미 「보건복지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심사 보고서」 또는 「교통부가 위탁한 심사·검정 기관이 발급한 차량 안전 검사 기준 심사 보고서」를 취득한 경우, 본국의 검사 대상 품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표 1 제한 물질의 함유량이 백분율 함유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의 표시 예

장비 명칭: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모델명: XXX (주)						
단위	제한 물질 및 화학 기호					
	납 (Pb)	수은 (Hg)	카드뮴 (Cd)	6가 크롬 (Cr ⁺⁶)	폴리브로민화 비페닐 (PBB)	폴리브로민화 디페닐 에테르 (PBDE)
회로 기판	초과 0.1 wt %	○	○	○	○	○

외장	○	○	초과 0.01 wt %	○	○	초과 0.1 wt %
제어 패널	—	○	○	○	○	○
부속품	—	○	○	○	○	○

비고 1. "0.1 wt % 초과" 및 "0.01 wt % 초과"는 제한 물질의 백분율 함량이 백분율 함량 기준치를 초과함을 의미한다.
비고 2. "○"는 해당 제한 물질의 백분율 함량이 백분율 함량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비고 3. "—"는 해당 제한 물질이 제외 대상임을 의미한다.

(주) 견본에 표시된 위치가 상품과의 대응 관계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경우, 견본 상단에 장비명 및 모델명란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견본이 여러 모델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여러 모델의 번호를 동일한 란에 표시할 수 있다.

표 2 제외 항목을 제외한 제한 사용 물질의 함량이 백분율 함량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표시 예

장비명: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모델명: YYY (주)						
단위	제한 물질 및 화학 기호					
	납 (Pb)	수은 (Hg)	카드뮴 (Cd)	6가 크롬 (Cr ⁺⁶)	폴리브로민화 비페닐 (PBB)	폴리브로민화 디페닐 에테르 (PBDE)
회로 기판	○	○	○	○	○	○
외장	○	○	○	○	○	○
제어 패널	—	○	○	○	○	○
부속품	—	○	○	○	○	○

비고 1. "○"는 해당 제한 물질의 함량이 백분율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비고 2. "—"는 해당 제한 물질이 제외 대상임을 의미한다.

(주) 견본에 표시된 위치가 상품과의 대응 관계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경우, 견본 상단에 장비명 및 모델명란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견본이 여러 모델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여러 모델의 번호를 동일한 란에 표시할 수 있다.